

현장 밀착형 「2026년 사업장 감독계획」 발표

- 임금체불, 장시간 노동 등 고의·상습 법 위반기업 및 공공부문 등에 역량 집중
- 국민의 요구, 새로운 노동·안전 이슈 등 현장 감독 수요에 즉각·선제적 대응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1.22.(목), 모든 일하는 사람의 노동조건을 두텁게 보호하고, 위험의 격차가 없는 공정하고 안전한 일터를 위한 「2026년 사업장 감독계획」을 발표했다.

올해는 감독 물량을 대폭('25년 5.2만 → '26년 9만<노동 4만, 산안 5만>) 확대한다. 또한, 지난해부터 실시한 「노동·산업안전 통합감독」을 확대하여, 현장에서 나타나는 위법·위험의 구조적 원인 확인 및 개선 노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상습·악의적 법 위반이나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 사업장은 즉각적 제재를 통해 감독의 실효성을 높이면서도, 영세·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컨설팅과 기술·재정 지원을 통해 기초 노동·안전 관리 역량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특히, 안전에 있어서는 실질적인 재해 감소를 위해 사고 발생 이전 위험을 차단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감독 방식과 관련하여서도 '수시·특별 감독'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여 국민의 감독 수요에 즉각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등 국민 체감도를 높이는 데 주력할 것이다.

[① 노동 분야]

1. 노동시장 격차 해소를 위한 「3대 분야」에 감독 역량 집중

우선 임금·근로시간·차별 등 노동시장 격차 해소를 위해 ①임금체불, ②공짜·장시간 노동 근절, ③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감독을 확대·강화한다.

첫째, '숨어있는 체불'을 적극적으로 찾아내는 데 감독 역량을 집중한다. 체불 피해자의 신고사건 중심으로 처리하던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 신고 사업장 대상 '체불 전수조사 감독*'을 통해 체불을 선제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 1년간 2회 이상 체불 신고 사업장 대상 감독 등을 통해 추가 체불 여부 확인

특히, 체불 전수조사 감독 이후 다시 체불 신고사건이 접수되는 등 체불 규모가 크고, 고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시 감독, 특별 감독을 순차로 실시하는 등 한 사업장에 대해 단계적으로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임금절도인 체불은 있어서는 안된다”라는 인식을 확산한다.

둘째, 공짜·장시간 노동 근절을 위한 감독을 역대 최대 수준으로 확대한다 (연 400개소). 특히, ‘26년 추진 예정인 포괄 임금 원칙적 금지 입법 전이라도 포괄임금 오·남용 감독을 적극 추진하고, 장시간 노동 우려가 높은 교대제, 특별연장근로 반복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장시간 감독도 실시할 예정이다.

셋째, 취약계층이 법의 보호를 두텁게 받을 수 있도록 ▲농·어촌 지역 중심 외국인 노동자 대상 법무부·지방정부 등 합동 감독 ▲대학가 편의점·카페 업종 중심 청년 노동자 대상 방학 기간 집중 감독 ▲장애인 표준 사업장의 장애인 노동자에 대한 감독도 신설·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비정규직의 경우 정규직 노동자와 동일한 업무를 함에도 임금 등의 차별을 받고 있지 않은지 중점 감독(연 200개소)하여, ‘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지급’의 원칙이 현장에 확립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2. 현장 감독 수요에 즉각적·선제적 대응을 위한 감독 확대

올해부터 「재직자 익명 신고센터」 운영을 상시화하여, 신고가 쉽지 않은 재직자 중심 익명 제보 감독을 대폭 확대한다. 제보 사업장 감독은 타 감독보다 법 위반 비율이 높은 만큼, 실효성 있는 감독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 익명 제보 사업장 감독 법 위반율 85.8% vs 일반 감독 법 위반율 57%

아울러,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사건 다수 접수 사업장, ▲최근 급성장한 기업 등 법 위반 발생 우려가 높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선제적 예방감독도 강화하고, 가짜 3.3 위장 고용, 사업장 쪼개기, 신(新) 산업 분야 등 새로운 사회적 이슈·분야에 대한 감독도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그간 감독의 사각지대에 있던 공공기관의 노무관리 적정성에 대한 감독도 새롭게 추진하여, 공공부문의 경우 청소·경비 등 동일 직무 등에 대해 동일한 임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는 등 국가가 모범적 사용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3. 체계적 사업장 관리 강화 및 감독결과 확산

체불 신고사건과 사업장 감독의 연계를 위해 ‘개인별 사건처리 중심’에서 ‘팀 단위 전담·관리체계’로 전환하여, 사업장에 대한 지속적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매년 말 ‘근로감독 연례보고서’를 발간하여 연간 실시한 감독 유형, 규모, 결과 등을 공유하고, 특히, 감독 시 확인된 주요 법 위반 사례 및 인사 노무관리 유의사항 등에 대해서는 다양한 사례를 적극 확산하여,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사후관리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② 산업안전 분야]

1. 감독 인프라 확대 등 신속 대응 체계 구축

감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감독 인력·기반시설을 대폭 확대한다. 우선, 산업안전 감독관 인력을 대폭 증원(‘25년 895명 → ‘26년 2,095명)하면서, 전문성이 높은 기술직 비율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또한, 전국에 70개 패트롤팀을 운영하고 패트롤카를 2배 수준으로 증차(‘25년 146대 → ‘26년 286대)하여 ‘상시 기동 대응 체계’를 갖추고, 전국 지방 관서에 드론을 배치(총 50대)하여 벌목·지붕공사 등 감독관이 접근하기 어려운 고위험 지역·작업에 대한 입체적 관리를 강화한다.

2. ‘적발 시 즉시 제재’ 원칙의 엄정한 법 집행

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한다. 적발 시 단순 시정지시가 아닌 사법처리 및 행정처분을 원칙으로 하여 ‘적발되면 그때 고치면 된다’는 안일한 인식을 뿌리 뽑을 방침이다. 이에 따라, 시정조치 위주의 「위험성평가 특화 점검」을 폐지하고 일반 점검·감독 체계로 전환하며, 위험성평가 실시 여부는 모든 점검·감독에서 필수적으로 확인하여 관리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중대재해의 전조인 ‘중상해재해에 대한 감독’을 신설하여 관리함으로써 중대재해 발생을 선제적으로 예방한다. 또한, “감독을 받았으니 당분간 안 올 것”이라는 인식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감독을 실시했던 사업장 중 현장 위험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개선이 확인될 때까지 반복 감독을 함으로써, 일회성 점검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안전 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

3. 소규모 취약 사업장에 대한 ‘선(先) 지원 후(後) 단속’ 체계 마련

안전·보건 관리 역량이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단계별 접근을 통해 체계적 개선을 유도한다. 영세 사업장에는 ‘정보 전달 길목’을 사전에 파악하여 재정·기술 지원 제공 및 계도를 우선 실시한다. 계도 및 기술·재정 지원 후에도 개선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집중 점검·감독으로 연계하는 체계를 운영한다.

아울러, 안전일터 지킴이 1천명을 현장에 투입하여 초소형 건설현장 등 고용노동부 감독관의 손길이 닿기 어려운 곳까지 촘촘하게 지도한다.

반면, 자체 안전관리 역량이 있는 중·대형 사업장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전담관리 체계를 적용하고, 산재 발생 시에는 엄정한 책임을 묻고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4. 노사 모두 스스로 안전수칙 준수하도록 지도 강화

현장의 위험을 가장 잘 아는 노동자의 목소리를 감독에 반영하고, 동시에 사업주와 노동자 스스로의 안전수칙 준수 책임도 강조한다.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한 감독 시에는 해당 작업 노동자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하여 현장 위험 요인을 파악하는 한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감독 참여를 확대하여 현장 중심의 감독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또한, 사업주뿐만 아니라 노동자도 안전모·안전대·안전띠 착용 등 기초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지도를 강화한다. 계도 기간을 거친 후에도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사업주와 노동자 모두에게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하게 대응하여 현장 전반의 안전수칙 준수 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방침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일터에서 다치는 일이 없고, 일하고도 대가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고, 비슷한 일을 하고 차별받는 일이 없는 ‘일터 민주주의’의 실현은 바로 ‘사업장 감독’을 어떻게 추진하느냐에 달려 있다”라고 말하며, “올해 사업장 감독 수준을 높여, 우리나라의 노동과 산업안전 수준이 높아지고, 일터에서의 위험 격차 해소와 노동 존중을 통한 진짜 성장의 발판이 될 수 있도록 부처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근로감독정책단 근로감독기획과	책임자	과 장	김태연 (044-202-7553)
		담당자	사무관	박종길 (044-202-7528)
담당 부서	안전보건감독국 안전보건감독기획과		담당자	주무관
		책임자		과 장
담당 부서	안전보건감독국 안전보건감독기획과	담당자	사무관	온남이 (044-202-8902)
			주무관	김대규 (044-202-8909)



목 표

• 실효적 근로감독으로 노동존중사회 확립 •

[기본 방향] 현장 작동성 높은 예방 감독 추진

구분		As Is('25년)	To Be('26년)
감독물량		2.8만개소	4만개소
감독형태		일률적 정기감독 중심 추진	적시성 있는 수사·특별 감독으로 재편
감독 방식	대상	신고사건, 과거 감독이력 등 우리부 전산 자료 중심으로 대상 선정	타 기관 정보, 외부 소셜미디어 등 다양한 정보를 활용하여 대상 선정
	조사	각종 서류 검토 중심	익명 설문, 노동자 면담 등 법 위반 사항 확인을 위한 다양한 수단 활용
	조치	자율개선 유도 후 시정지시 중심	즉각적 시정지시 → 미개선 시 사법처리
협업		우리부 단독 추진	노동-산안 통합감독 확대 타 부처 및 지방정부와 협업 확대
사후관리		감독 이후 별도 사후관리 미흡	감독 결과 지역 단위 간담회, 카드뉴스 배포 → 감독 결과 확산으로 재발방지 집중

과제 ① 노동시장 격차해소를 위한 3대 분야 감독 역량 집중

- 1 체불은 절도! 근로감독으로 '체불 제로' 사회 실현
- 2 '공짜 노동 및 장시간 노동' 근절을 위한 감독 확대
- 3 청년·외국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감독 강화

과제 ② 현장 감독 수요에 즉각적·선제적 대응

- 1 익명 제보, 청원형 등 국민이 필요로 하는 감독 확대
- 2 가짜 3.3, 직장 내 괴롭힘 등 새로운 노동이슈 감독 확대
- 3 국세청·국토부·법무부 등 부처간 협업 및 지방정부 합동 감독

과제 ③ 감독의 효과성·적시성 확보를 위한 기반 확충

- 1 감독과 신고사건의 연계를 통한 효과성 제고
- 2 현장 집행력 제고를 위한 감독행정 체계 전환
- 3 홍보 및 사후관리 강화를 통한 감독 결과 확산

구분	근로감독 주요 내용	
정기감독	분야별 종합예방 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야별 감독 필요 사업장 선정 후 실시 → 분야별 종합예방점검 형태로 운영 ① 포괄임금·장시간근로 ② 사회적 취약계층 고용사업장(외국인, 청년, 장애인) ③ 파견·비정규직 다수 고용 사업장 ④ 고용평등 취약 의심 사업장 ⑤ 퇴직연금 적립금 미충족 사업장 ⑥ 공공부문 비정규직 감독 ⑦ 사업주 부당노동행위 감독
	현장 예방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관서 상황에 따른 이슈를 선정하여 지방정부 합동점검 및 집단 컨설팅* 운영 * 관내 수시·특별감독 결과 공유 신생 기업 대상 기초 노동법 교육 등
수시감독	체불전수감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년간 2회 이상 체불 사업장 대상 현장 감독 → 타 노동자 추가 체불 확인
	기획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직자 익명제보 감독 ▶ 새로운 노동이슈·분야에 대한 감독 ① 가짜 3.3 위장고용, 사업장 쪼개기 의심 사업장 ② 신산업 분야(AI, 로봇, 바이오, 핀테크 등) ③ 최근 매출 급증 신생기업 및 공공부문 ④ 직장내 괴롭힘 예방 감독 등
	신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습 법 위반기업 근로감독 강화 최근 6개월 이내 3회 이상 법 위반이 확정된 기업은 의무적으로 감독 필요성 검토·실시
	청원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독이 꼭 필요한 사업장에 대한 감독 강화 청원내용에 대한 심사는 강화하되, 법 위반이 확인된 기업은 불시감독 원칙
	재감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감독 이후에도 법 위반이 지속되고 있는 기업은 재감독을 통해 시정기회 없이 즉시 사법처리
특별감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악의적인 법 위반기업, 중대한 법 위반으로 다수 피해 발생 사업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강화 	

목 표

• 위험 격차 없는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한 예방 및 규율 •

총 감독 물량

50,000개소+α
사업장 현장 접근 확대

감독관 인력

2,095명
수사·감독 인력 및 부서 보강

안전일터 지킴이

1,000명
소규모 현장 사각 해소

5대 핵심 추진 전략

1

감독 물량 대폭 확대

◦ 2.4만 → 5만개소: 상시 패트를 점검 체계로 현장 접근 확대

2

수시형-신속대응 중심 개편

◦ 위험징후 포착 시 개입하는 전국 70개 패트를팀 상시 가동

3

작은 사업장 집중관리 및 길목 확보

◦ 영세 현장 대상 길목 찾고, 「사전제도-기술지원-감독·점검」 단계별 접근

4

노사가 함께 지키는 안전질서

◦ 기초 수칙(안전모 등) 단속 강화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감독 참여

5

위험사업장에는 즉시 제재, 집중 규율

◦ 행·사법처리 원칙 ◦ 중상해재해 감독 신설 ◦ 2차 감독 신설

산업안전보건 감독 기반

조직 및 전문 인력 확충

- 감독관 증원: 2,095명
* '25.1월 895명 → '26.12월 2,095명
- 조직 개편: 지방관서 40개 부서 신설
* 광역감독과, 산재감독과, 건설감독과, 중대수사과

장비 보강하여 기동력 강화

- 패트롤카: 146대 → 286대
* 현장 대응·순찰 기능 강화
- 드론 감독: 22대 → 50대
* 벌목·지붕 등 고위험 지역 관리

감독관 전문성 제고

- 신규자 교육: 1,200명 이상
* 실습·체험 중심으로 조기 적응 지원
- 경력자 교육: 경력 단계별 전문 교육
* 형사법령 및 수사 실무 심화 교육

민관 협력

- 안전일터 지킴이: 1,000명
* 추락사고 다발 공중 투입
- 안전공단: 순찰 및 기술·재정 지원
* 위험사업장 감독 연계

구분	산업안전보건감독 주요 내용	
예방형	상시 패트롤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내 위험 징후 상시 모니터링 ▶ 신규 사업장 + 소규모 사업장 + 최근 일정기간 내 점검·감독 실시사업장
	「작은 사업장」 집중감독·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세 사업장 안전관리 강화 ▶ 사전 계도 기간 내 기술·재정지원, 이후 집중감독 실시 ▶ 지붕·벌목 등 중대재해 급증한 초소규모 고위험 사업장
	주제별 감독·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험요인별·시기별 특성에 맞는 주제별 감독·점검 ▶ 공사규모별 건설현장 감독, 폭염 취약 사업장 감독, 고독성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점검, 외국인 다수 고용사업장 합동점검 등
	기획감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대재해 다발 기인물·업종 등 적시 관리
	강조주간운영 현장 집중 점검 주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단·민간기관 총동원하여 월단위 시기별 위험요인에 대응하고 경각심 제고
사후형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감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이행실태 전반을 확인
	중상해재해 발생 사업장 감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3년간 중상해재해*가 2건 이상 발생한 사업장 ▶ 중대재해에 준하는 강도 높은 감독 실시 <p>* 91일 이상 휴업 사고성재해</p>
	2차 감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정 기간 내 감독 실시 사업장 중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업장 <p>* 예: 위험기계기구 다수 보유, 위험성평가 미실시 등 안전관리 역량 부족, 시정조치 이행결과 추가확인 필요, 최근 1년 내 중상해 재해 발생 등</p>
	연계감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단·민간재해예방기관·지자체 통보 위험·불량 사업장
	특별감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동시 2명 이상 사망, 1년 이내 3회 사망, 명령 위반으로 중대재해 발생 ▶ 근로기준+산업안전 통합 실시 원칙으로 엄정 대응